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전문적·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
- 전국(장애인)체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
3. 주요내용

- 사업소 추가 신설(안 제20조)
 -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사업소 설치 및 소관사무 신설
- 사업소 명칭 및 위치 변경, 신설(안 별표 2)
 - 구미시서울사무소 위치 변경
 - (당초)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)
 - (변경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(여의도동)
 -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명칭 및 위치 신설
 - 사업소명 :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
 - 위 치 : 구미시 상모동 156-1번지 일원
-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제2조)
 -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: 2020. 5. 31 → 2021. 5. 31(1년 연장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13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라 조례상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여의도로 변경하며, 전국체전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조성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은 건립 협의 시 직영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·체계적 운영을 위한 별도 행정기구 신설이 필요하며, 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었음.
-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육대회 마무리 및 각종 시설 운영 이관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,
-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